

평등정책 보고서②

<노동/일의 세계> 함께읽기

일시 • 2020년 7월 1, 8, 15일, 매주 수요일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노동/일의 세계>보고서는?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는 왜 모두에게 존엄한 노동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일의 세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평등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 영역의 차별 현실을 분석하고자, 특히 소수자가 일의 세계에서 어떠한 조건과 경험을 맞닥뜨리기 쉬운지와 권리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제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수자의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를 돌아봄으로써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의 세계에서의 권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수자 노동권이 분리된 개별 집단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집단별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에 도전하며, 평등한 일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전망합니다.

<노동/일의 세계> 함께읽기 • 1강 진행 : 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차	7월 1일(수) 오후 2시	총론_모두의 존엄한 노동,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 보론_일의 경계
		• 함께읽기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2차	7월 8일(수) 오후 3시	1장 원하는 일을 찾을 권리 3장 일하며 자신을 지킬 권리
		• 함께읽기 : 오진호(직장갑질119),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회정(기록노동자)
3차	7월 15일(수) 오후 3시	2장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4장 미래를 기대할 권리 5장 동료들을 구할 권리
		• 함께읽기 : 김우(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이경(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이후 보고서)가 노동이 그나마 사회적 보장의 목록에 기입된 ‘노동권’이 ‘고용계약관계와 임금’노동에 한하지 않다는 점과 그런 노동이 누군가에게 사회에서 삶의 자리의 유무와 그 높낮이를 좌우해선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소수자의 노동권이 곧 모두의 노동권이며 이런 맥락으로 일의 세계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담았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반가운 선언이다. 덕분에 (평등으로) 노동이 인간존엄을 구현하는 경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보고서의 목적처럼 존엄하기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살기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노동과 사회적 기여와 가치(실현)과 인간다운 삶의 영위라는 것이 지금의 왜곡의 역사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문은 이 기대를 몇 가지 질문으로 대신한다.

2020년, 노동과 평등을 둘러싼 풍경 셋

코로나19 대확산의 위기와 불평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논란 - ‘인국공 사태’,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이 세 개의 이슈가 현재 우리의 적나라한 좌표라 할 수 있다. 바 이러스는 평등하되 감염의 위기는 불평등하다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그치지 않는 현실처럼 우연한 사고처럼 누군가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었다. 방역을 비롯한 일상과 생계의 위협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이후 대책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며 더욱 뭉치는 자들이 되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가 끊임없이 그 자리로 고정시켜놓았던 이들이다. 누가 시민이고 비시민인지, 누가 예외의 낙인을 지니고 있는지, 누가 ‘정상’적인 사회기여분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그것을 발명한 사회의 짜임새와 의식의 흐름을 접어 두고 갖대로 들이미는 것은 결국 보편적인 권리를 격을 갖춘 이들에게 걸맞는 대접쯤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파이가 있고 그것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경쟁으로 나눠야할 파이만이 가능한 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가난을 증명하고 순위안에 들어야만 하는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인 생활보장이라는 것, 최저선이 곧 보편선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모두가 동등한 주체로서 의사소통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없이는 결국 제자리면 다행인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풍경들 앞에서 다시한번 노동의 권리와 평등을 생각해 볼 때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모두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염병의 대확산과 위기 앞에서 왜 불평등의 고리는 심화되어 떠오르는가. 모두의 생명과 건강보다 인간다운 삶보다 앞선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불멸 절대존재인 것일까.

‘소수자 노동권이 모두의 노동권의 바로미터’라는 말의 의미는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벌어진 차별사례를 통해 차별의 요소를 예방, 제거하는 것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과거와 평등한 미래를 사회구성원의 삶으로 기대 할 수 있는 현재, 이렇게 세 시점이 이어져야만 해소가 가능하다. 차별은 바이러스처럼 종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 의해, 언제 어디서나’ 계속 생길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서 경계를 살펴야 하는 영원한 과제이기도 하다. 불평등한 몸들을

식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몸들을 발명하는 사회와 그것을 체화하는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살펴야만 하는 것이 권리로서의 평등이 주는 의무라 생각한다. 평등의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 점에서 소수자의 노동권은 증명된 특별한 존재에 한해 내리는 특별한 조치, 비소수자와 동등한 ‘처우’를 위한 보완조치로서가 아니라 모두의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현되는 기본사항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

- 노동운동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불법파견에 맞선 운동에 대한 성찰과 소수자 노동권

: 정규직을 모델로 상정하고 이와 비교해 차별을 따지는 것이 당장의 어려움을 ‘구제’할 순 있었다. 이제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도로 분할된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시간과 생산물의 화폐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노동의 목적을 ‘사람’ 대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의 이윤’으로 갈아치우는데 망설임이 없는 지금의 일의 세계와 체제를 재구성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 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일의 세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피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

- 노동/비노동의 경계는 기여와 이에 상응하는 대가의 원리로 구성되어야만 하는가.
- 그렇다면 이 대가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자원과 관계의 얼마를 구성해야하는가
- 한정된 자원(파이)는 누가 확인하고 크기를 결정하는가
-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그 많은 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향상은 어디에 복무하는가.
- 노동의 권리가 노동할 권리에 국한되는가.
- 비노동 상태인 이들의 보편적 삶의 보장 없이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가.
- 보편적 삶의 보장은 노동하는 인간을 기본으로 하는 일의 세계와 양립할 수 있는가.
- 현 시기 많은 대안들의 종착점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확장되고 있는가.

모든 인간이 타인과 서로의 노동을 통한 생산에 기대며 살아야만 하고 이를 통한 가치와 관계에서 자기 실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노동을 매개로 한 인간존엄의 약속이 다른 모든 약속과 권리들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장애인, 노동권, 공공시민노동

•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장애인운동과 노동권

- 1980년대 말,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태동시킨 청년 장애인들이 들고 나온 두 가지 대중적 요구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었음. 그들이 노동권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러 맥락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올리히 벡을 비롯한 여러 논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이란 기본적으로 ‘노동 시민’—취업 노동을 통해서 그 온전한 자격과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시민—이라는 조건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임.
- 다른 한편, 장애대중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범주가 발명되고 정의되었던 맥락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요구’에 가까웠다고도 볼 수 있음. 1800년대 초중반 ‘the disable-bodied’라는 개념이 형성될 때, 이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조건에서 ‘일할 수 없는 몸’을 가리키는 개념이었고, 이러한 장애인의 개념은 현대의 장애 관련 법률에서도 그 흔적이 비교적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임.¹⁾ 즉 그 정의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히 일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의’ 노동권이란 일종의 형용모순이 되는 것.
- 이러한 역사적·정치경제학적 조건으로 인해 한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노동 현실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30%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 30% 중반의 고용률), 장애인 운동 진영의 노동권 투쟁도 이 법이 후퇴·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투쟁에 머물러 있었고, 근로지원인 제도나 지원고용 제도의 도입, 최저임금법 상의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 폐지를 제외하면 어떤 공세적 의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장애인권과 관련된 국내 지표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것이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결국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현재의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에 장애인이 ‘편입’(incorporation)되는 방식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노동을 둘러싼 현재적 조건과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 ‘변환’(transformation)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음.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공공시민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공공시민노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9장 참조).

1)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적어도 1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정의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결손, 정신적 결손, 사회적 장애(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로 인해 취업이나 직장 유지가 곤란한 자”로 정의된다. 소위 ‘개발도상국’인 파키스탄에서도 “장애인은 상해, 질병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거나 고용되는 데 불리함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공시민노동이라는 새로운 의제, 혹은 문제설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는 총론에서 여러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몇 문장만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음.
 - 1) “‘소수자’의 위치가 소수적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일의 세계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8쪽).
 - 2) “소수자는 일의 세계[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먼저 겪는 사람들이다. …… 소수자의 위치에서 보자는 제안은 …… 일의 세계를 다르게 보자는 제안이며, 오히려 소수자의 경험으로부터 권리의 가능성을 찾자는 제안이다”(12쪽).
 - 3) “일의 자리는 권리의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소수자’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의 세계**로의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7쪽).
- 토론자가 위의 세 문장을 뽑은 이유는 장애인운동 진영에서 현재 담론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투쟁의 요구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시민노동’이 정확히 위의 세 가지 문제의식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공공시민노동 개념에 기반을 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요구하며 지난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85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점거 농성을 진행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성과로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됨.

구분	사업 기간	근로시간	직무	지원액(원)(1인/월)		계획 인원 (260명)	비 고
				인건비(원)	*운영비(원)		
시간제 일자리	’20.07.01 ~12.31. (6개월)	1일 4시간 /주20시간	장애인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인식개선 활동 등	897,660	90,540	130명	인건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복지형 일자리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481,040	20,660	130명	

- 다른 한편 공공시민노동의 구상은 당연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권을 위한 것이지 장애인의 노동권만을 위한 전략이 아님. 그러나 현실의 운동에서는 ‘일하지 않을 권리’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 담론이 기성 정치권까지를 포함해 점점 더 강력히 작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공공시민노동을 위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은 아직까지 매우 미약한 상황임.
-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보론]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존엄할 권리’ 절에서 이 공공시민노동과 기본소득이 함께 병렬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평등한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정책들을 모아낸 본 보고서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지만, 인권운동 진영이 이 양쪽 의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에 기반하여 개입해 들어갈 것인지는 구체적인 토론이 한 번 정도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됨.
- 즉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의 세계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과 “일이 세계에서 자리는 얻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158쪽)는 양가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의식을 넘어, 한 발 더 나아간 구체적인 운동 전략이 고민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양자는 가치적으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만, 구체적인 운동의 전략에서는 다소 상이한 판단과 경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노동권의 보편적 보장+ 공공복지의 강화 vs 일자리 감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구축).

일이 세계에서 자리를 얻는 유일한 경로가 아니기 위해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근로연계복지, 활성화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을 비활성화(inactivation) 상태로 규정하여 복지와 연계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활성화(activation) 상태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취업능력 고취 및 배양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함. 일을 세계에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 설정하고 비활성화상태인 ‘기생하는 2등 시민’에게 교육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활성화상태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미임.

노동을 강제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자리정책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의 본격화는 IMF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부터 본격화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 공공부조였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하며, 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있음’ 판정받은 경우 자활사업 일자리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이러한 근로연계복지의 본격화는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빈곤, ‘실직 노숙인’에 대한 대책이었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음. 당시의 대량 실업은 개인의 취업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인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위험인가? 당연히 전자가 아닌 후자였다는 점에서 ‘실직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그들의 과거 노동경험이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치였어야 함. 더불어 당시 ‘실직 노숙인’이 아닌, ‘기존 노숙인’은 해당 정책의 주요 대상도 아니었음.

자활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활성화상태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때문에 일 8시간 씩 주 5일 노동함에도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 되며 자신의 노동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음. 예산에 따라서 노동일수가 조정되고 사업단 폐쇄로 인한 강제휴식 또는 사업단이 강제 변경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함. 더 불어 보고서에서도 언급하듯, 일자리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강제되는 조건으로 작동하며 실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강제노동에 처해지거나 수급권을 포기조용하게 작동하고 있음.

물론 ‘실직 노숙인’에 대한 대책이 자활사업 일자리만 있었던 것은 아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였으며 해당 정책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 역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노

동시장에 재취업하라는 비현실적인 대책임. 40-50대에 접어든 사람에게 교육받고 자격증 취득해 노동시장에 재취업하라는 발상은 현실적용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함.

활성화정책의 문제점은 홈리스일자리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전일제 또는 반일제 노숙인공공일자리를 제공하지만 3-6개월에 불과함. 물론 여기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최저임금 또는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임금을 3~6개월 받은 뒤 자립·자활하는 것은 불가능함. 더불어 이 역시 예산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기도 함. 최근 서울시에서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을 통해 반일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노동시간 단축, 주휴수당 미지급, 월차수당의 유급휴가 강제전환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함.

근로연계복지, 활성화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조치와 민간노동시장으로 밀어내기를 통해 계속 강화되어 옴. 이러한 흐름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거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진입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계속된 실패와 빈곤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더불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비활성화상태로 규정함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를 비활성화상태로서 낙인찍으며, 복지의 권리성을 훼손시킴. 이렇듯 근로연계복지, 활성화정책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 편으로는 일반노동시장으로 밀어내는 시도를 강화하며 복지제도 수급자를 낙인찍는 행위가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일이 세계에서 자리를 얻는 유일한 경로가 아니기 위해

보고서에서 언급하듯 일 할 권리와 함께 일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님.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이나 노숙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해당 일자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으로부터 자존을 회복하고 단절 되었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도 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지만 노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안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함.

더불어 일이 세계에서 자리를 얻는 유일한 경로가 아닐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일자리 참여가 아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강제노동을 없애야 하며, 자신 외의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수급권 보장결정에 포함시키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급여수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실화되어야 함.